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01
----------	------------

제안년월일 : 2021년 3월 3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이 신규 사업시행자에게만 적용될 소지가 있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부과대상인 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별표의 단서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이 신규 사업시행자뿐 만 아니라 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3조제1항제1호의 단서).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제3조제1항제1호(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의 단서 중 “단지 매각 이전에 사업시행자에 일괄”을 “사업시행자에”로 한다.

【 별표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가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m^2)	원인자부담금 (천원)	연면적 (m^2)	원인자부담금 (천원)
85 이하	864	151 이하	1,312
86 ~ 150	2,180	152 ~ 431	2,247
151 ~ 300	3,688	432 ~ 915	4,388
301 ~ 400	5,120	916 ~ 1,575	8,185
401 ~ 500	6,749	1,576 ~ 2,593	10,456
501 이상	14,611	2,594 ~ 5,556	23,314
		5,557 ~ 10,986	38,142
		10,987 ~ 16,125	48,698
		16,126 ~ 34,376	84,597
		34,377 ~ 61,842	167,814
		61,843 ~ 99,763	219,750
		99,764 ~ 212,640	462,767
		212,641 ~ 382,752	1,044,423
		382,753 이상	1,350,830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m^2$ 초과할 경우에도 $85m^2$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

※ 부과시기는 지구 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 부과하되, 추후 계획변경에 따라 차액을 정산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1. 신설

가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m^2)	원인자부담금 (천원)	연면적 (m^2)	원인자부담금 (천원)
85 이하	327	151 이하	327
86 ~ 150	916	152 ~ 431	916
151 ~ 300	1,473	432 ~ 915	1,473
301 ~ 400	2,618	916 ~ 1,575	2,618
401 ~ 500	4,418	1,576 ~ 2,593	4,418
501 이상	6,774	2,594 ~ 5,556	6,774
		5,557 ~ 10,986	12,369
		10,987 ~ 16,125	16,427
		16,126 ~ 34,376	28,011
		34,377 ~ 61,842	45,059
		61,843 ~ 99,763	61,028
		99,764 ~ 212,640	86,682
		212,641 ~ 382,752	116,918
		382,753 이상	140,994

2. 개조

- 신·구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m^2$ 초과할 경우에도 $85m^2$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45%;">가정용</th> <th style="width: 45%;">비가정용</th> </tr> </thead> <tbody> <tr><td>내경 15mm</td><td>864,000원</td><td>1,312,000원</td></tr> <tr><td>내경 20mm</td><td>2,180,000원</td><td>2,247,000원</td></tr> <tr><td>내경 25mm</td><td>3,688,000원</td><td>4,388,000원</td></tr> <tr><td>내경 30mm</td><td>5,120,000원</td><td>8,185,000원</td></tr> <tr><td>내경 40mm</td><td>6,749,000원</td><td>10,456,000원</td></tr> <tr><td>내경 50mm</td><td>14,611,000원</td><td>23,314,000원</td></tr> <tr><td>내경 65mm</td><td>-</td><td>38,142,000원</td></tr> <tr><td>내경 80mm</td><td>-</td><td>48,698,000원</td></tr> <tr><td>내경 100mm</td><td>-</td><td>84,597,000원</td></tr> <tr><td>내경 125mm</td><td>-</td><td>167,814,000원</td></tr> <tr><td>내경 150mm</td><td>-</td><td>219,750,000원</td></tr> <tr><td>내경 200mm</td><td>-</td><td>462,767,000원</td></tr> <tr><td>내경 250mm</td><td>-</td><td>1,044,423,000원</td></tr> <tr><td>내경 300mm</td><td>-</td><td>1,350,830,000원</td></tr> <tr><td>내경 350mm</td><td>-</td><td>1,729,460,000원</td></tr> <tr><td>내경 400mm</td><td>-</td><td>2,340,437,000원</td></tr> </tbody> </table>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내경 15mm	864,000원	1,312,000원	내경 20mm	2,180,000원	2,247,000원	내경 25mm	3,688,000원	4,388,000원	내경 30mm	5,120,000원	8,185,000원	내경 40mm	6,749,000원	10,456,000원	내경 50mm	14,611,000원	23,314,000원	내경 65mm	-	38,142,000원	내경 80mm	-	48,698,000원	내경 100mm	-	84,597,000원	내경 125mm	-	167,814,000원	내경 150mm	-	219,750,000원	내경 200mm	-	462,767,000원	내경 250mm	-	1,044,423,000원	내경 300mm	-	1,350,830,000원	내경 350mm	-	1,729,460,000원	내경 400mm	-	2,340,437,000원	<p>[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가정용</th> <th colspan="2">비가정용</th> </tr> <tr> <th>연면적 (㎡)</th> <th>원인자 부담금 (천원)</th> <th>연면적 (㎡)</th> <th>원인자 부담금 (천원)</th> </tr> </thead> <tbody> <tr><td>85 이하</td><td>864</td><td>151 이하</td><td>1,312</td></tr> <tr><td>86 ~ 150</td><td>2,180</td><td>152 ~ 431</td><td>2,247</td></tr> <tr><td>151 ~ 300</td><td>3,688</td><td>432 ~ 915</td><td>4,388</td></tr> <tr><td>301 ~ 400</td><td>5,120</td><td>916 ~ 1,575</td><td>8,185</td></tr> <tr><td>401 ~ 500</td><td>6,749</td><td>1,576 ~ 2,593</td><td>10,456</td></tr> <tr><td>501 이상</td><td>14,611</td><td>2,594 ~ 5,566</td><td>23,314</td></tr> <tr><td></td><td></td><td>5,567 ~ 10,986</td><td>38,142</td></tr> <tr><td></td><td></td><td>10,987 ~ 16,125</td><td>48,698</td></tr> <tr><td></td><td></td><td>16,126 ~ 34,376</td><td>84,597</td></tr> <tr><td></td><td></td><td>34,377 ~ 61,842</td><td>167,814</td></tr> <tr><td></td><td></td><td>61,843 ~ 99,763</td><td>219,750</td></tr> <tr><td></td><td></td><td>99,764 ~ 212,640</td><td>462,767</td></tr> <tr><td></td><td></td><td>212,641 ~ 382,752</td><td>1,044,423</td></tr> <tr><td></td><td></td><td>382,753 이상</td><td>1,350,830</td></tr> </tbody> </table>	가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	원인자 부담금 (천원)	연면적 (㎡)	원인자 부담금 (천원)	85 이하	864	151 이하	1,312	86 ~ 150	2,180	152 ~ 431	2,247	151 ~ 300	3,688	432 ~ 915	4,388	301 ~ 400	5,120	916 ~ 1,575	8,185	401 ~ 500	6,749	1,576 ~ 2,593	10,456	501 이상	14,611	2,594 ~ 5,566	23,314			5,567 ~ 10,986	38,142			10,987 ~ 16,125	48,698			16,126 ~ 34,376	84,597			34,377 ~ 61,842	167,814			61,843 ~ 99,763	219,750			99,764 ~ 212,640	462,767			212,641 ~ 382,752	1,044,423			382,753 이상	1,350,830	<p>[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가정용</th> <th colspan="2">비가정용</th> </tr> <tr> <th>연면적 (㎡)</th> <th>원인자 부담금 (천원)</th> <th>연면적 (㎡)</th> <th>원인자 부담금 (천원)</th> </tr> </thead> <tbody> <tr><td>85 이하</td><td>864</td><td>151 이하</td><td>1,312</td></tr> <tr><td>86 ~ 150</td><td>2,180</td><td>152 ~ 431</td><td>2,247</td></tr> <tr><td>151 ~ 300</td><td>3,688</td><td>432 ~ 915</td><td>4,388</td></tr> <tr><td>301 ~ 400</td><td>5,120</td><td>916 ~ 1,575</td><td>8,185</td></tr> <tr><td>401 ~ 500</td><td>6,749</td><td>1,576 ~ 2,593</td><td>10,456</td></tr> <tr><td>501 이상</td><td>14,611</td><td>2,594 ~ 5,566</td><td>23,314</td></tr> <tr><td></td><td></td><td>5,567 ~ 10,986</td><td>38,142</td></tr> <tr><td></td><td></td><td>10,987 ~ 16,125</td><td>48,698</td></tr> <tr><td></td><td></td><td>16,126 ~ 34,376</td><td>84,597</td></tr> <tr><td></td><td></td><td>34,377 ~ 61,842</td><td>167,814</td></tr> <tr><td></td><td></td><td>61,843 ~ 99,763</td><td>219,750</td></tr> <tr><td></td><td></td><td>99,764 ~ 212,640</td><td>462,767</td></tr> <tr><td></td><td></td><td>212,641 ~ 382,752</td><td>1,044,423</td></tr> <tr><td></td><td></td><td>382,753 이상</td><td>1,350,830</td></tr> </tbody> </table>	가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	원인자 부담금 (천원)	연면적 (㎡)	원인자 부담금 (천원)	85 이하	864	151 이하	1,312	86 ~ 150	2,180	152 ~ 431	2,247	151 ~ 300	3,688	432 ~ 915	4,388	301 ~ 400	5,120	916 ~ 1,575	8,185	401 ~ 500	6,749	1,576 ~ 2,593	10,456	501 이상	14,611	2,594 ~ 5,566	23,314			5,567 ~ 10,986	38,142			10,987 ~ 16,125	48,698			16,126 ~ 34,376	84,597			34,377 ~ 61,842	167,814			61,843 ~ 99,763	219,750			99,764 ~ 212,640	462,767			212,641 ~ 382,752	1,044,423			382,753 이상	1,350,830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내경 15mm	864,000원	1,312,000원																																																																																																																																																																																			
내경 20mm	2,180,000원	2,247,000원																																																																																																																																																																																			
내경 25mm	3,688,000원	4,388,000원																																																																																																																																																																																			
내경 30mm	5,120,000원	8,185,000원																																																																																																																																																																																			
내경 40mm	6,749,000원	10,456,000원																																																																																																																																																																																			
내경 50mm	14,611,000원	23,314,000원																																																																																																																																																																																			
내경 65mm	-	38,142,000원																																																																																																																																																																																			
내경 80mm	-	48,698,000원																																																																																																																																																																																			
내경 100mm	-	84,597,000원																																																																																																																																																																																			
내경 125mm	-	167,814,000원																																																																																																																																																																																			
내경 150mm	-	219,750,000원																																																																																																																																																																																			
내경 200mm	-	462,767,000원																																																																																																																																																																																			
내경 250mm	-	1,044,423,000원																																																																																																																																																																																			
내경 300mm	-	1,350,830,000원																																																																																																																																																																																			
내경 350mm	-	1,729,460,000원																																																																																																																																																																																			
내경 400mm	-	2,340,437,000원																																																																																																																																																																																			
가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	원인자 부담금 (천원)	연면적 (㎡)	원인자 부담금 (천원)																																																																																																																																																																																		
85 이하	864	151 이하	1,312																																																																																																																																																																																		
86 ~ 150	2,180	152 ~ 431	2,247																																																																																																																																																																																		
151 ~ 300	3,688	432 ~ 915	4,388																																																																																																																																																																																		
301 ~ 400	5,120	916 ~ 1,575	8,185																																																																																																																																																																																		
401 ~ 500	6,749	1,576 ~ 2,593	10,456																																																																																																																																																																																		
501 이상	14,611	2,594 ~ 5,566	23,314																																																																																																																																																																																		
		5,567 ~ 10,986	38,142																																																																																																																																																																																		
		10,987 ~ 16,125	48,698																																																																																																																																																																																		
		16,126 ~ 34,376	84,597																																																																																																																																																																																		
		34,377 ~ 61,842	167,814																																																																																																																																																																																		
		61,843 ~ 99,763	219,750																																																																																																																																																																																		
		99,764 ~ 212,640	462,767																																																																																																																																																																																		
		212,641 ~ 382,752	1,044,423																																																																																																																																																																																		
		382,753 이상	1,350,830																																																																																																																																																																																		
가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	원인자 부담금 (천원)	연면적 (㎡)	원인자 부담금 (천원)																																																																																																																																																																																		
85 이하	864	151 이하	1,312																																																																																																																																																																																		
86 ~ 150	2,180	152 ~ 431	2,247																																																																																																																																																																																		
151 ~ 300	3,688	432 ~ 915	4,388																																																																																																																																																																																		
301 ~ 400	5,120	916 ~ 1,575	8,185																																																																																																																																																																																		
401 ~ 500	6,749	1,576 ~ 2,593	10,456																																																																																																																																																																																		
501 이상	14,611	2,594 ~ 5,566	23,314																																																																																																																																																																																		
		5,567 ~ 10,986	38,142																																																																																																																																																																																		
		10,987 ~ 16,125	48,698																																																																																																																																																																																		
		16,126 ~ 34,376	84,597																																																																																																																																																																																		
		34,377 ~ 61,842	167,814																																																																																																																																																																																		
		61,843 ~ 99,763	219,750																																																																																																																																																																																		
		99,764 ~ 212,640	462,767																																																																																																																																																																																		
		212,641 ~ 382,752	1,044,423																																																																																																																																																																																		
		382,753 이상	1,350,830																																																																																																																																																																																		
<p>※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mm 구경을 적용한다.</p>	<p>※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 초과할 경우에도 85㎡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p> <p>※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 와 협의 후 결정한다.</p> <p>※ 부과시기는 지구 계획 승인 후 단지 매각 이전에 사업시행자에 일괄 부과하되, 추후 계획변경에 따라 차액을 정산한다.</p>	<p>※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 초과할 경우에도 85㎡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p> <p>※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 와 협의 후 결정한다.</p> <p>※ 부과시기는 지구 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 부과하되, 추후 계획변경에 따라 차액을 정산한다.</p>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구 분	신설	개조
내경 15mm	327,000원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다만 산중 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의 입입금수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 면제
내경 20mm	916,000원	
내경 25mm	1,473,000원	
내경 30mm	2,618,000원	
내경 40mm	4,418,000원	
내경 50mm	6,774,000원	
내경 65mm	12,369,000원	
내경 80mm	16,427,000원	
내경 100mm	28,011,000원	
내경 125mm	45,059,000원	
내경 150mm	61,028,000원	
내경 200mm	86,682,000원	
내경 250mm	116,918,000원	
내경 300mm	140,994,000원	
내경 350mm	177,487,000원	
내경 400mm	193,161,000원	

※ 내경구분은 입입금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입입금수관은 15mm 구경을 적용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1. 신설

가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	원인자 부담금 (천원)	연면적 (㎡)	원인자 부담금 (천원)
85 이하	864	151 이하	1,312
86 ~ 150	2,180	152 ~ 431	2,247
151 ~ 300	3,688	432 ~ 915	4,388
301 ~ 400	5,120	916 ~ 1,575	8,185
401 ~ 500	6,749	1,576 ~ 2,593	10,456
501 이상	14,611	2,594 ~ 5,566	23,314
		5,567 ~ 10,986	38,142
		10,987 ~ 16,125	48,698
		16,126 ~ 34,376	84,597
		34,377 ~ 61,842	167,814
		61,843 ~ 99,763	219,750
		99,764 ~ 212,640	462,767
		212,641 ~ 382,752	1,044,423
		382,753 이상	1,350,830

2. 개조

- 신·구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 초과할 경우에도 85㎡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1. 신설

가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	원인자 부담금 (천원)	연면적 (㎡)	원인자 부담금 (천원)
85 이하	864	151 이하	1,312
86 ~ 150	2,180	152 ~ 431	2,247
151 ~ 300	3,688	432 ~ 915	4,388
301 ~ 400	5,120	916 ~ 1,575	8,185
401 ~ 500	6,749	1,576 ~ 2,593	10,456
501 이상	14,611	2,594 ~ 5,566	23,314
		5,567 ~ 10,986	38,142
		10,987 ~ 16,125	48,698
		16,126 ~ 34,376	84,597
		34,377 ~ 61,842	167,814
		61,843 ~ 99,763	219,750
		99,764 ~ 212,640	462,767
		212,641 ~ 382,752	1,044,423
		382,753 이상	1,350,830

2. 개조

- 신·구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 초과할 경우에도 85㎡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경별 업종별”을 “업종별 환산연면적 구간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가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m^2)	원인자부담금 (천원)	연면적 (m^2)	원인자부담금 (천원)
85 이하	864	151 이하	1,312
86 ~ 150	2,180	152 ~ 431	2,247
151 ~ 300	3,688	432 ~ 915	4,388
301 ~ 400	5,120	916 ~ 1,575	8,185
401 ~ 500	6,749	1,576 ~ 2,593	10,456
501 이상	14,611	2,594 ~ 5,556	23,314
		5,557 ~ 10,986	38,142
		10,987 ~ 16,125	48,698
		16,126 ~ 34,376	84,597
		34,377 ~ 61,842	167,814
		61,843 ~ 99,763	219,750
		99,764 ~ 212,640	462,767
		212,641 ~ 382,752	1,044,423
		382,753 이상	1,350,830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m^2$ 초과할 경우에도 $85m^2$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

※ 부과시기는 지구 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 부과하되, 추후 계획변경에 따라 차액을 정산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1. 신설

가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m^2)	원인자부담금 (천원)	연면적 (m^2)	원인자부담금 (천원)
85 이하	327	151 이하	327
86 ~ 150	916	152 ~ 431	916
151 ~ 300	1,473	432 ~ 915	1,473
301 ~ 400	2,618	916 ~ 1,575	2,618
401 ~ 500	4,418	1,576 ~ 2,593	4,418
501 이상	6,774	2,594 ~ 5,556	6,774
		5,557 ~ 10,986	12,369
		10,987 ~ 16,125	16,427
		16,126 ~ 34,376	28,011
		34,377 ~ 61,842	45,059
		61,843 ~ 99,763	61,028
		99,764 ~ 212,640	86,682
		212,641 ~ 382,752	116,918
		382,753 이상	140,994

2. 개조

- 신·구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m^2$ 초과할 경우에도 $85m^2$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은 별표와 같다.</p> <p>② ~ ④ (생략)</p> <p>[별표]</p> <p>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p> <p>○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p>	<p>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 ----- 업종별 환산연면적 구간의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별표]</p> <p>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p> <p>○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35%;">가정용</th> <th style="width: 50%;">비가정용</th> </tr> </thead> <tbody> <tr><td>내경 15mm</td><td style="text-align: right;">864,000원</td><td style="text-align: right;">1,312,000원</td></tr> <tr><td>내경 20mm</td><td style="text-align: right;">2,180,000원</td><td style="text-align: right;">2,247,000원</td></tr> <tr><td>내경 25mm</td><td style="text-align: right;">3,688,000원</td><td style="text-align: right;">4,388,000원</td></tr> <tr><td>내경 30mm</td><td style="text-align: right;">5,120,000원</td><td style="text-align: right;">8,185,000원</td></tr> <tr><td>내경 40mm</td><td style="text-align: right;">6,749,000원</td><td style="text-align: right;">10,456,000원</td></tr> <tr><td>내경 50mm</td><td style="text-align: right;">14,611,000원</td><td style="text-align: right;">23,314,000원</td></tr> <tr><td>내경 65mm</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right;">38,142,000원</td></tr> <tr><td>내경 80mm</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right;">48,698,000원</td></tr> <tr><td>내경 100mm</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right;">84,597,000원</td></tr> <tr><td>내경 125mm</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right;">167,814,000원</td></tr> <tr><td>내경 150mm</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right;">219,750,000원</td></tr> <tr><td>내경 200mm</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right;">462,767,000원</td></tr> <tr><td>내경 250mm</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right;">1,044,423,000원</td></tr> <tr><td>내경 300mm</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right;">1,350,830,000원</td></tr> <tr><td>내경 350mm</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right;">1,729,460,000원</td></tr> <tr><td>내경 400mm</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right;">2,340,437,000원</td></tr> </tbody> </table>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내경 15mm	864,000원	1,312,000원	내경 20mm	2,180,000원	2,247,000원	내경 25mm	3,688,000원	4,388,000원	내경 30mm	5,120,000원	8,185,000원	내경 40mm	6,749,000원	10,456,000원	내경 50mm	14,611,000원	23,314,000원	내경 65mm	-	38,142,000원	내경 80mm	-	48,698,000원	내경 100mm	-	84,597,000원	내경 125mm	-	167,814,000원	내경 150mm	-	219,750,000원	내경 200mm	-	462,767,000원	내경 250mm	-	1,044,423,000원	내경 300mm	-	1,350,830,000원	내경 350mm	-	1,729,460,000원	내경 400mm	-	2,340,437,000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width: 50%;">가정용</th> <th colspan="2" style="width: 50%;">비가정용</th> </tr> <tr> <th style="width: 25%;">연면적 (㎡)</th> <th style="width: 25%;">원인자부담금 (천원)</th> <th style="width: 25%;">연면적 (㎡)</th> <th style="width: 25%;">원인자부담금 (천원)</th> </tr> </thead> <tbody> <tr><td>85 이하</td><td style="text-align: right;">864</td><td>151 이하</td><td style="text-align: right;">1,312</td></tr> <tr><td>86 ~ 150</td><td style="text-align: right;">2,180</td><td>152 ~ 431</td><td style="text-align: right;">2,247</td></tr> <tr><td>151 ~ 300</td><td style="text-align: right;">3,688</td><td>432 ~ 915</td><td style="text-align: right;">4,388</td></tr> <tr><td>301 ~ 400</td><td style="text-align: right;">5,120</td><td>916 ~ 1,575</td><td style="text-align: right;">8,185</td></tr> <tr><td>401 ~ 500</td><td style="text-align: right;">6,749</td><td>1,576 ~ 2,593</td><td style="text-align: right;">10,456</td></tr> <tr><td>501 이상</td><td style="text-align: right;">14,611</td><td>2,594 ~ 5,556</td><td style="text-align: right;">23,314</td></tr> <tr><td></td><td></td><td>5,557 ~ 10,986</td><td style="text-align: right;">38,142</td></tr> <tr><td></td><td></td><td>10,987 ~ 16,125</td><td style="text-align: right;">48,698</td></tr> <tr><td></td><td></td><td>16,126 ~ 34,376</td><td style="text-align: right;">84,597</td></tr> <tr><td></td><td></td><td>34,377 ~ 61,842</td><td style="text-align: right;">167,814</td></tr> <tr><td></td><td></td><td>61,843 ~ 99,763</td><td style="text-align: right;">219,750</td></tr> <tr><td></td><td></td><td>99,764 ~ 212,640</td><td style="text-align: right;">462,767</td></tr> <tr><td></td><td></td><td>212,641 ~ 382,752</td><td style="text-align: right;">1,044,423</td></tr> <tr><td></td><td></td><td>382,753 이상</td><td style="text-align: right;">1,350,830</td></tr> </tbody> </table>	가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	원인자부담금 (천원)	연면적 (㎡)	원인자부담금 (천원)	85 이하	864	151 이하	1,312	86 ~ 150	2,180	152 ~ 431	2,247	151 ~ 300	3,688	432 ~ 915	4,388	301 ~ 400	5,120	916 ~ 1,575	8,185	401 ~ 500	6,749	1,576 ~ 2,593	10,456	501 이상	14,611	2,594 ~ 5,556	23,314			5,557 ~ 10,986	38,142			10,987 ~ 16,125	48,698			16,126 ~ 34,376	84,597			34,377 ~ 61,842	167,814			61,843 ~ 99,763	219,750			99,764 ~ 212,640	462,767			212,641 ~ 382,752	1,044,423			382,753 이상	1,350,830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내경 15mm	864,000원	1,312,000원																																																																																																																		
내경 20mm	2,180,000원	2,247,000원																																																																																																																		
내경 25mm	3,688,000원	4,388,000원																																																																																																																		
내경 30mm	5,120,000원	8,185,000원																																																																																																																		
내경 40mm	6,749,000원	10,456,000원																																																																																																																		
내경 50mm	14,611,000원	23,314,000원																																																																																																																		
내경 65mm	-	38,142,000원																																																																																																																		
내경 80mm	-	48,698,000원																																																																																																																		
내경 100mm	-	84,597,000원																																																																																																																		
내경 125mm	-	167,814,000원																																																																																																																		
내경 150mm	-	219,750,000원																																																																																																																		
내경 200mm	-	462,767,000원																																																																																																																		
내경 250mm	-	1,044,423,000원																																																																																																																		
내경 300mm	-	1,350,830,000원																																																																																																																		
내경 350mm	-	1,729,460,000원																																																																																																																		
내경 400mm	-	2,340,437,000원																																																																																																																		
가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	원인자부담금 (천원)	연면적 (㎡)	원인자부담금 (천원)																																																																																																																	
85 이하	864	151 이하	1,312																																																																																																																	
86 ~ 150	2,180	152 ~ 431	2,247																																																																																																																	
151 ~ 300	3,688	432 ~ 915	4,388																																																																																																																	
301 ~ 400	5,120	916 ~ 1,575	8,185																																																																																																																	
401 ~ 500	6,749	1,576 ~ 2,593	10,456																																																																																																																	
501 이상	14,611	2,594 ~ 5,556	23,314																																																																																																																	
		5,557 ~ 10,986	38,142																																																																																																																	
		10,987 ~ 16,125	48,698																																																																																																																	
		16,126 ~ 34,376	84,597																																																																																																																	
		34,377 ~ 61,842	167,814																																																																																																																	
		61,843 ~ 99,763	219,750																																																																																																																	
		99,764 ~ 212,640	462,767																																																																																																																	
		212,641 ~ 382,752	1,044,423																																																																																																																	
		382,753 이상	1,350,830																																																																																																																	
<p>※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mm 구경을 적용한다.</p>	<p>※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 초과할 경우에도 85㎡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p> <p>※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p> <p>※ 부과시기는 지구 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 부과하되, 추후 계획변경에 따라 차액을 정산한다.</p>																																																																																																																			

현 행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구 분	신설	개조
내경 15mm	327,000원	산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 장수. 다만, 산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의 인입급수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장수 면제
내경 20mm	916,000원	
내경 25mm	1,473,000원	
내경 30mm	2,618,000원	
내경 40mm	4,418,000원	
내경 50mm	6,774,000원	
내경 65mm	12,369,000원	
내경 80mm	16,427,000원	
내경 100mm	28,011,000원	
내경 125mm	45,059,000원	
내경 150mm	61,028,000원	
내경 200mm	86,682,000원	
내경 250mm	116,918,000원	
내경 300mm	140,994,000원	
내경 350mm	177,487,000원	
내경 400mm	193,161,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mm 구경을 적용한다.

개 정 안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1. 신설

가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	원인자부담금 (천원)	연면적 (㎡)	원인자부담금 (천원)
85 이하	327	151 이하	327
86 ~ 150	916	152 ~ 431	916
151 ~ 300	1,473	432 ~ 915	1,473
301 ~ 400	2,618	916 ~ 1,575	2,618
401 ~ 500	4,418	1,576 ~ 2,593	4,418
501 이상	6,774	2,594 ~ 5,556	6,774
		5,557 ~ 10,986	12,369
		10,987 ~ 16,125	16,427
		16,126 ~ 34,376	28,011
		34,377 ~ 61,842	45,059
		61,843 ~ 99,763	61,028
		99,764 ~ 212,640	86,682
		212,641 ~ 382,752	116,918
		382,753 이상	140,994

2. 개조

- 신·구 원인자부담금 차액 장수

-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 초과할 경우에도 85㎡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